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1. 19 선고 2019나21606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청구 등의 소]

---

## 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1. 19 선고 2019나216061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19. 10. 18 선고 2019가단107722 판결

## 전 문

**원고, 피항소인A**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화우

담당변호사 정현기

**피고, 항소인1. B**

2. C

3. D

**변론 종결**2020. 10. 22.

**판결 선고**2020. 11. 19.

**제1심판결**의정부지방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9가단107722 판결

## 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8. 5. 28. 접수 제148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5,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위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-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"피고 I에게"를 "피고 B에게"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행의 "피고 B는"을 "피고 B은"으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의 "피고에게"를 "원고에게"로 고친다.

### 2. 추가 판단

#### 가. 피고들의 주장

원고는 2012년경 피고 B에게 2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다고 말하였고,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무렵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. 따라서 이 사건 말소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.

#### 나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1 내지 3,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 
사정 즉, ① 원고가 E, F, G, H에게 합계 7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였고, 피고 B에게 3,000만 원을  
대여하였으며, 위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 
764,000,000원에 달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, 2억 원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 
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, ② 또한 피고  
B은 원고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,  
전소들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
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들의 위  
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**재판장판사**김문성

**판사**김혜선

**판사**박세황

별지